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05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위성곤·박희승·허영  
박지혜·박정현·이해식  
송옥주·윤준병·서영교  
이춘석·진성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라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나 교육 플랫폼의 다양화가 요구되지만, 현재는 시설의 공동 활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온라인 교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원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크게 저하된 실정임.

이에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일 시설에서 병행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수강 대상이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원이 ‘방과 후 교육과정(돌봄)’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2조제7호 및 제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온라인교습”이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습을 말한다.

제2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운영학원 : 제1호 및 제2호의 교습과정을 동일한 시설에서 시간대 또는 공간을 분리하여 통합 운영하는 학원

제6조제1항 전단 중 “인적사항”을 “인적사항, 학원의 종류, 병행교습 여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습과정”을 “학원의 종류, 병행교습 여부, 교습과정”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돌봄학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학원을 신청에 의하여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을 운영하는 돌봄학원(이하 “돌봄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돌봄학원은 교습 시간 전후로 아동에게 휴식 및 안전 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돌봄학원의 지정 절차, 취소 요건 및 구체적인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돌봄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기금 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돌봄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합운영학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성인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학원시설의 복합문화 이용)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원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
2. 전시 및 공연
3.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4. 주민 커뮤니티 활동

제15조제2항 중 “교습시간”을 “교습 방식 및 교습시간”으로 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운영학원 등으로 전환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강사 연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온라인교습”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습을 말한다.</u></p>
<p>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lt;신설&gt;</u></p>	<p>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3. <u>통합운영학원 : 제1호 및 제2호의 교습과정을 동일한 시설에서 시간대 또는 공간을 분리하여 통합 운영하는 학원</u></p>
<p>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p> <p>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u>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u></p>	<p>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p> <p>① ----- ----- ----- ----- <u>인적사항, 학원의 종류, 병행교습 여부</u>----- -----</p>

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략)

<신설>

-----  
-----  
----- 학원의 종류, 병행교습  
여부, 교습과정-----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돌봄학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학원을 신청에 의하여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을 운영하는 돌봄학원(이하 “돌봄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돌봄학원은 교습 시간 전후로 아동에게 휴식 및 안전 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돌봄학원의 지정 절차, 취소 요건 및 구체적인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돌봄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 운

제8조(시설기준) (생략)

<신설>

<신설>

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기금 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돌봄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설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통합운영학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성인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의2(학원시설의 복합문화이용)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원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
2. 전시 및 공연
3.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4. 주민 커뮤니티 활동

제15조(교습비등) ① (생략)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신설>

제15조(교습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교습 방식 및 교습시간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운영학원 등으로 전환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강사 연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